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3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23.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 9.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민주적인 의회상의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의원의 활동원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2)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10조)
- 3) 위원회와 위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제26조)
- 4)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7조 ~ 제32조)

5) 다른 조례의 폐지

-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6) 다른 조례의 개정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거창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단일한 조례로 정리하고,
- 개별 조례로 산재되어 있던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민과 거창군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 운영

제5조(연간 총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거창군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2월 5일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는 법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장 위원회와 위원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총무위원회: 5명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제1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관한 사항

제14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0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다

제21조(위원의 선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26조(공청회 및 토론회) 의회는 안전심사 및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27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29조(군정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충질문은 제4항의 본 질문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0조(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31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7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9조 군정 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그 밖에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의사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②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③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을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23.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 9.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삭제함(안 제6장)
 - 군정질문, 서면질문, 서류제출의 건(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신설)
-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제19조의2, 제70조, 제8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규칙 개정안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의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 및 제83조 등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을 “거창군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의회”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를 “제72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장(제66조·제66조의2·제67조·제67조의2·제68조)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95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23.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 9.

나. 발 의 자: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11명)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 9.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준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 2)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공표(안 제3조)
- 3) 주민조례청구서 등 각종 서식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 4)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 방법(안 제6조, 안 제7조)
- 5) 청구인 명부의 보정 절차 및 기간(안 제9조)

- 6)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안 제10조)
- 7)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안 제11조)
- 8) 주민조례 입안 지원(안 제12조)
- 9) 청구권 확인 사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수 협조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 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대표자인 경우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한 경우

⑥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⑦ 청구인 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청구인명부 연대 서명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거창군청 및 각 읍·면별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 군·의회 누리집,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